

대한비뇨의학회 대외공로상 시상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회(이하 본 학회) 대내외적 활동으로 본 학회의 위상과 신인도 제고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봉사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비뇨의학회 대외공로상”이라 한다.

제 3 조 (설립 취지)

본 상의 시상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대한비뇨의학회의 대내외적 활동으로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함으로써 학회차원에서 그 노고를 기리고 학회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되었다.

제 4 조 (수상자격)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로서 본 학회를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본 학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아래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대민, 혹은 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본 학회의 위상을 드높인자
2.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봉사정신으로 학회 활동에 헌신하면서 본 학회 외 공적 학회, 혹은 유관 단체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본 학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

제 5 조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 추천은 추계학술대회 개최 2개월 전 공고하여 개최 1개월 전까지 비뇨의학과 수련병원과장, 학회 평의원, 또는 학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제 6 조 (구비서류)

추천인은 봉사상 시상에 관한 학회 양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해당업적의 요약 포함)
2. 이력서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
3. 학회, 의학 및 의료단체, 정부기관 및 보건관련단체, 학술단체 활동경력, 대민봉사, 사회봉사활동 등의 서류
4. 기타 추천 관련 서류
5. 3 항의 입증 서류

제 7 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봉사상 수상자 선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봉사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회장, 총무, 홍보이사로 하고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4명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간사는 홍보이사가 당연직으로 한다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도 당연직 및 추천위원의 임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 8 조 (심사 및 의결)

1. 봉사상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추계학술대회 개최 3개월 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심사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 중 1명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필요 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5. 설립 취지에 적절한 수상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9 조 (심사 기준)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및 학회의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본 상의 설립취지에 맞게 심사한다.

제 10 조 (시상)

1. 본 상은 매년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비뇨의학회 학술대회 때 시상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 11 조 (기타)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11월부터 시행한다.